

학사운영 개선을 위한 구성원 참여 등에 관한 규정

제정 : 2014.12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하 "본 대학"이라 한다) 업무 전반에 관하여 교원과 직원 및 학생과 그 외의 교육수요자가 대학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의견 개진과 자유롭게 민주적인 제안을 장려하고, 이를 대학의 학사운영 반영함으로써 본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하거나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내용)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하며 실행 가능하여야 한다.

1. 학사제도 또는 학사행정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
2. 교육, 연구 및 학습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3. 업무의 능률 증대 및 업무 간소화에 관한 사항
4. 예산 절감에 관한 사항
5. 교직원 및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
6. 안전사고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
7. 기타 본 대학 발전에 관한 방안

제4조(절차) ①본 대학 교원과 직원 및 학생 등은 제안의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본대학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다.

②공동으로 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분담업무 내용과 기여도 및 공동제안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③제안은 별도로 정하는 기간 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.

제5조(주관부서) 이 규정에 관한 업무는 기획처에서 주관한다.

제6조(위원회) ①제출된 제안에 대한 심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안심사위원회를 둔다.

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제안의 심사, 채택 및 포상에 관한 사항
2. 채택된 안의 적용범위와 시행시기에 관한 사항
3. 기타 본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 합리적 의견수렴 과정 등에 관한 사항

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외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, 각 부총장과 교무위원 중 기획처장, 교무처장, 총무처장, 학생복지처장은 당연직으로 한다.

②교수, 직원, 학생, 학부모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③위원장은 교무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
제8조(심사기준) ①제출된 제안은 창의성, 교육 및 연구개선 효과, 경제적 효용성, 적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.

②제1항의 심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③처리결과는 제안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채택된 제안은 관련부서에 통보한다.

제9조(보상 및 특전) ①채택된 제안은 업무개선 정도 및 비용절감 효과 등 실적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.

②본 대학 교직원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제안의 운영실적을 근무평정 및 성과급을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③관련부서에서는 개선된 결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.

제10조(비밀유지)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의 관계자는 제안의 내용을 업무의 목적 이외에는 채택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.

제11조(기타) 기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서식 1>

학사운영 등 개선 제안서

※ 기재 방식은 최대한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

학부(과)명(전공명)		작성일자	
부서(팀)명		연락처	
제 출 자		이메일주소	
제안 과제 명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율제안 /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정제안			
1. 제안배경			
2. 주요내용			
3. 구체적 실시내용			
4. 예상되는 성과			

※첨부 : 참고자료 등